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5
----------	------

발의연월일 : 2024. 7. 3.

발의자 : 조정훈 · 최수진 · 박충권
조경태 · 박형수 · 김예지
이철규 · 유상범 · 권성동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

등 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비”를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교육비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를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 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다. (생 략)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 설>

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교육비로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라. -----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p><u>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u></p> <p><u>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u></p> <p><u>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u></p> <p><u>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u></p> <p><u>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u></p> <p><u>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u></p> <p><u>정하는 금액</u></p>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